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9. 7.(금)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비공개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2018-48-446)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나>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에 따라 제공의무 미달성 방송사업자(부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방송문화)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동 사업자에 대해 ‘19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의무제공 미달률을 반영한 정부 지원금을 감액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에서는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의거해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경과는 2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제출 및 산정이 있었고, 7월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있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실적 평가 및 심의·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안건으로 선정되어서 8월에 이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하고 홈페이지 게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른 의무부과가 지상파방송은 ‘12년 7월부터, 유료방송은 ‘13년 1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체별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보도 및 종편PP에 대해서는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한국수어방송 5%로 동일하게 부과 되고, SO와 위성방송, 일반PP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방송평가에 따른 배점도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는 전체 155개사가 의무대상인데 그중 149개사가 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무비율 미달 사업자는 지역지상파방송 6개 사업자가 의무미달이 되어 있는데 부산문화방송은 자막방송을 소량 미달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하 5개 지역MBC는 화면해설방송을 소폭 미달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있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견입니다. 6개 사업자의 경우, 의무 비율 미달성에 있어 고의성이 크지 않으며, '18년 현재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 실시가 바람직하겠다, 다만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19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시 정부 제작지원금 일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사업자가 제출된 미달성 사유인데 부산문화방송은 폐쇄자막방송 실시에 있어 제작사를 외주를 주는데 이때 제작사와 네트워크 장애로 소폭 의무 목표 미달성이 있었다고 사유로 제출했고, 나머지 5개 지역MBC는 '17년 당시 총파업 때문에 화면해설방송 수중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검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마 위반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결되면 내용을 공표하고 행정 지도를 연이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장애인방송 지원금 부과 때 미달성비율을 반영 해서 일부 축소적용을 '19년 3월에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붙임>으로 전체 사업자의 편성 의무 결과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장애인방송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정부 지원이 있지요? 얼마나 지원되니까?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매칭으로 지원되는데 전체 예산은 연간 42억원 정도이고, 각 지역 지상파와 지상파 그리고 유료방송사별 매칭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상파는 12%, 15% 정도 지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정부지원금까지 나갈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편성비율을 지키는 않는다는 것은 그냥 넘기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또 성의가 없고 그런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가결과를 보면 종편이나 보도PP, 또 SO, 일반 프로그램 공급자 PP까지도 전원 다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준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 지상파방송만 이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지상파 방송은 그만큼 비중도 있고 또 지상파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따라야 하는 이런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지상파방송이 이를 어긴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나가고 있는데, 미달성 사유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화면해설방송 위반에 대해 작년 MBC의 특수한 상황인 총파업이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 김석진 상임위원

- 파업을 이유로 들었습니까?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예, 본사와 화면해설방송이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수중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파업을 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이 없어서 장애인방송을 못 했다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행정조치는 결국 지원금 삭감이라는 것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현재 장애인방송 의무에 대해 과태료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과태료를 바로 들어갈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 전체를 아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또 시정명령도 이 사항에서 특정한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정명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금 삭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사실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안전에 보면 의무편성비율 위반 6개 사업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무처에서 현장 실사를 한 것입니까?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아닙니다. 이 의견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낸 의견인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 고시에 따른 실적 평가 업무를 위임받은 회의체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다는 것이고, 사무처 의견은 아닙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 실사를 다 해 본 것입니까?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맞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연간 전체 실적을 다 제출받고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로 나온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과태료 처분은 현재 방송법 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작지원금 축소나 방송평가 때 감점 조치는 당연히 포함되지요?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예, 그렇습니다. 방송평가 때 당연히 반영될 사항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보고된 자료를 보면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편성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사의 최소한의 공적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과태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과태료 처분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의무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 처분까지 방송법에 신설하는 것은 자칫 과잉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편성의무 목표달성율이 96%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다소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평가 감점조항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제작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도의 불이익이면 행정지도로 전체 결과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한 이유가 파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5곳이나 있는데 당시의 파업 상황은 공영방송인 KBS도 똑같이 파업이 있었고, MBC도 파업이 있었는데 KBS는 하나도 위반한 곳이 없고 MBC 중에서도 전체 지역방송사 중 여섯 군데만 문제가 된 것은 다른 지역 방송도 똑같은 파업상황에서 다 수행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지원금 줄이는 것 외에 어느 정도 행정지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으면 합니다.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그 부분에 대해 적시해서 공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진국을 가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고, 또 저희 경제력으로 충분히 이런 장애인이나 소수자, 약자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저희 장애인 방송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지도를 통해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주)씨제이헬로와 태백·통일케이블넷 간 협업계약 관련 시정권고에 관한 건 (2018-48-447)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주)씨제이헬로와 태백·통일케이블넷 간 협업계약 관련 시정권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 간 수익배분을 위한 협업계약과 관련하여 <붙임>의 시정 권고(안)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씨제이헬로 영동방송과 태백·통일케이블넷 간의 수익배분과 관련된 협업계약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경과는 '17년 6월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사요청 신고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인수, 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방송구역에서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신고인과 피심인 간 계약 관련 주요 내용 및 기초사실입니다. 신고인의 전송망을 통해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및 지역사업권료 등 공통비용을 공제한 후 신고인 80%, 피심인 20%의 비율로 수익배분하는 전송선로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09년 1월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20%, 지역사업권료 2.8%로 한다. 단, 실제 효율에 의한 차액은 연말에 정산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심인은 2010년 말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효율을 20%에서 25%로, 지역사업권료 효율을 2.8%에서 1.98%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연말에 실제효율에 의한 차액 정산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심인과 신고인 간 정산 절차입니다. 피심인은 매월 수신료, 프로그램 사용료 및 지역 사업권료 적용효율, 공통비용 금액, 신고인 배분금액 등이 기재된 정산내역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여 상호 금액을 확인한 후 수신료 수익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효율 변경과 관련한 신고인 주장입니다.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효율을 20%에서 25%로 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추가 협정서에 기재된 효율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심인 주장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효율을 25%로 인상하여 적용한 것은 정부의 재허가 조건 때문에 이행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20%로 하되 실제 효율에 의한 차액은 2009년 12월 말에 정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 효율을 25%로 적용하는 것이 계약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는 내용과 매월 신고인에게 송부하는

정산내역서에 25% 요율로 계산된 배분금액에 대하여 신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약 5년 동안 아무런 이견 없이 공제되었다는 것은 신고인과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에게 발급한 허가증 부관사항에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년 4월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25% 미만을 지급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 정산 미이행 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을 연말에 정산하지 않았다고 신고인은 주장하였습니다. 피심인은 프로그램 사용료, 지역사업권료에 대하여 실제 요율에 의한 정산 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이 인상 되는 추이를 감안하면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공제했어야 하나 최소 요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은 ‘2012년 방송수신료의 27%, 2013년에는 방송수신료의 28%였습니다. 지역사업권료는 과기정통부 고시에 의한 요율보다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지역사업권료는 2012년 2.17%, 2013년 2.2%였는데 피심인은 2.8%를 적용하였습니다. 피심인은 신고인과 수익 배분 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하여 공제하기 어려워, 프로그램 사용료 일부와 지역사업권료를 상계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확인 결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연말에 매월 수익배분 시 적용한 요율과 다른 요율을 적용하여 차액 정산하였고, ‘13년부터는 실제요율에 의한 차액정산을 미이행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요율 변경 적용 관련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로 수신료 25%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2009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되었고, 방통위가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피심인이 25% 요율을 적용한 정산 내역서를 신고인이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약 5년 동안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부당하게 수익 배분을 거부·제한·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 정산 미이행 부분입니다. 매년 12월 말 수익배분 시 정산 내역서 발송,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과정을 거쳐 변경된 요율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년 동안 피심인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또한 이용계약서에 특별히 피심인에게 요율산정에 관하여 협의를 제안할 의무 또는 공식적 합의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 정산 미이행 자체를 방송법상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권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정산 미이행 등이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에게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나, 지역사업권료 연말 차액정산의 현실적 불가능, 지역사업권료는 그다음 연도에 과기정통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연말 차액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변경 등 계약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할 수 없는 피심인이 계약 갱신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씨제이헬로 법인 본사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여 지역 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신고인과 협의하여 현재 유료방송시장 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피심인 의견입니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이견 없음. 협업사업자와의 계약 내용의 현실적 불부합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 확인 수단의 미비 등 방통위 판단을

존중함. 지역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신고인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갱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8페이지 조사내용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피심인만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II.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지행위 규정에 보면 명확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행위를 미이행했다면, 즉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 정산을 미이행한 것 아닙니까? 미이행이라는 것은 결국 지연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지행위 위반에 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저희가 김앤장, 지평, 한중, 엘케이엔비파트너스라는 4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저희가 정산하라고 하면 씨제이헬로가 PP에게 지급할 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준은 27%, 28%지만 2010년 31%에 2013년 34%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해석해서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 계약내용이 신고인에게 큰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정산이라는 부분은 쌍방이 해야 하는 것이 정산이기 때문에 정산을 미이행한 것 자체만으로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산 양방의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요율 구조 자체가 재허가 때 정해준 25%로 하라는 것 이외에...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25% 이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실제 지급한 요율대로 정산을 한다면 오히려 신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실제 요율대로 적용해서 씨제이헬로가 PP사용료 지급한 대로 했다면 나중에는 34%, 3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제하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고인에게 돌아갈 돈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씨제이헬로 입장에서는 이것을 설득하기도 그렇고, 큰 규모의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정 권고(안)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법인 본사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괄 지급해서 지역 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이 78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업 계열 MSO로 시장구조가 재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제12조에 엄연히 지역사업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 여건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이 우리 방통위의 책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결국 지역사업권이 무너져서 생긴 현실적인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사업권역인 IPTV의 급속한 성장 등 방송환경이 급변했지만 SO의 지역사업권 범위, 그리고 그에 관련된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방송법에서는 여전히 지역방송 권역이 존재하고 있고 전송망 등 기술적 조치들도 78개 권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방송 사업자별로 프로그램 사용내용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이번 시정권고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무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은 계약 관행에 대한 갱신노력을 게을리한 점 그리고 기존 계약을 방치한 행위는 영세사업자인 신고인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갑질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과 현실에 부합한 갱신 계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정권고안이 적절하다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큰 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약에 의해 사업자들 간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계약내용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협의해야 합니다. 다시 협의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특히 신고인은 작은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제이헬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MSO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프로그램 사용료를 이렇게 올려서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지요.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 권고를 내지만 앞으로도 특히 큰 사업자들이 작은 사업자에 대해 갑질로 비쳐지는 행위들은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읽어보지 못했는데 안전 형식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시정권고안이 있고, 뒤에 결론으로 피심인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구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권고 내리고 나서 피심인이 '방통위 판단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구성상 이 안전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피심인 의견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저는 이것은 형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피심인 의견 중 '방통위 위법성 판단에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은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나중에 이 안전이 문서로 남는데 우리가 시정권고를 내리고 뒤에 사업자가 피심인 의견으로

해서 '위법성 판단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문서가 종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부분이었으면 앞에 왔었는데 이것은 위법성 판단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단순한 시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진술이었기 때문에 끝에 붙였던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별첨] 으로 넣어야지요. 시정권고에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판단이 들어간 다음에 사업자가 이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넣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제가 봤으면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무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박영환 법률자문관

-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 이효성 위원장

- 예.

○ 박영환 법률자문관

- 사소한 것인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권고(안)의 핵심은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갱신'이라는 말은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점이 존속기간 연장입니다. 함부로 종료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컨대 이 문안을 '신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현 유료방송시장 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함' 이런 정도로 다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충분히 알아보셨지요?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법률자문관계서 말씀하신 내용을 문장에 반영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고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3월에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10월 18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를 위해 7월에 위치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고, 규개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고안건 고시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금년 8월에 정책연구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위치정보법 시행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지’를 ‘휴업’으로, ‘폐지’를 ‘폐업’으로 표현을 순화하였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의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사업신고, 양수·법인 합병·분할 신고, 휴·폐업 신고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신설되는 서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와 관련하여 신고, 휴·폐업 신고·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과 관련해서 신설 및 개정되는 서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나>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해당 고시의 각 조항과 별표 내의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사업계획서 파일 제출 시 현행 ‘CD 및 디스켓’으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식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의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사업계획서 파일 제출 시 현재 ‘CD’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식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9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 법령시행일인 10월 18일에 고시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 내용은 신고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용어 변경과 서식 정비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의의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10시 08분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의결사항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에 관한 건 (2018-48-445) (비공개)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6분 폐회 】